

Vol.1521

# 법원공보

2017. 6. 1. Thu.



법원행정처

## ● 목 차

규칙	881	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882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
	884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885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8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99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90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903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905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909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예 규	916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919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92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924	

## ● 규 칙

### ◎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대법원규칙 제2736호 2017. 5. 25. 공포)

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도서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37호 2017. 5. 25. 공포)

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다)”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대법원규칙 제2738호 2017. 5. 25. 공포)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39호 2017. 5. 25. 공포)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를 “3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제4조(원천징수등의 금지)

-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 1. ~ 3. (생략)
- 4.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 징수등을 하는 경우
- ② (생략)

#### 개 정 안

##### 제4조(원천징수등의 금지)

-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3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  
-----
- ② (현행과 같음)

###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40호 2017. 5. 25. 공포)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임대주택법」 제15조의2”를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로 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장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제4조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수수료표”를 “보수표”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18조제4항제2호”를 “제13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수수료”를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수수료표”를 “보수표”로, “수수료”를 각각 “보수”로, “보수”를 “돈 또는 물건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수수료표”를 “보수표”로, “수수료”를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수수료”를 “보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 중 “수수료”를 각각 “보수”로, “보수”를 “돈 또는 물건을”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개업자”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u>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u>중개업자</u>의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u>공인중개사법</u>」-----                      -----                      -----<u>개업공인중개사</u>-----                      -----                      -----.</p>
<p><b>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b>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u>중개업자</u>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p><b>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b>                      -----<u>개업공인중개사</u>-----                      -----                      -----.</p>
<p>1. ~ 5. (생략)                      6. 「<u>임대주택법</u>」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                      6. 구 「<u>임대주택법</u>」(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                      7. (현행과 같음)</p>
<p><b>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b>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b>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b>                      -----                      -----.</p>
<p>1. ~ 3. (생략)                      4. 「<u>광업재단저당법</u>」에 따른 광업재단                      5. 「<u>공장저당법</u>」에 따른 공장재단</p>	<p>1. ~ 3. (현행과 같음)                      4. 「<u>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u>」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lt;삭제&gt;</p>
<p><b>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b>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u>중개업자</u>는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b>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b>                      -----<u>개업공인중개사</u>-----                      -----<u>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u>-----                      -----                      -----.</p>

현 행

제5조(등록요건)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일 것
- 2. ~ 3. (생략)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1. ~ 3. (생략)
-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 ① 법원행정처장은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중개업자에 관한 행정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회에게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안

제5조(등록요건)

공인중개사-----  
-----.

- 1.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개업공인중개사-----  
-----
- 5.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요청)

- ① -----국토교통부장관-----  
-----  
-----개업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장관-----  
-----관-----  
-----  
-----

현행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업자는 등록증·매수신청 대리 등 수수료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교육)

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다만,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인 대표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② -----국토교통부장관-----  
-----.

제9조(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보수표-----  
-----.

제10조(실무교육)

①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제13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4항제2호-----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  
-----.

② -----개업공인중개사-----  
-----.

현 행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 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④ 매수신청의 위임을 받은 중개업자는 매수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2조(공제사업)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액)

① 중개업자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법인 : 2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 : 1억 원 이상

② ~ ③ (생략)

개 정 안

③ -----  
-----개업공인중개사-----  
-----  
-----.

④ -----개업공인중개사-----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제사업)

① -----  
-----개업공인중개사-----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  
-----.

제13조(보증금액)

① 개업공인중개사-----  
-----  
-----.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  
-----  
-----.

2. 개업공인중개사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신설>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 ① 중개업자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문서 이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개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보존)

- ①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략)

개정안

제13조의2(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업을 휴업(3월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대리행위의 방식)

- ① 개업공인중개사-----  
-----  
-----  
-----  
-----  
-----  
-----  
-----  
-----  
-----
- ② 법인인 공인중개사 -----  
-----  
-----  
-----
- ③ 개업공인중개사 -----  
-----  
-----  
-----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보존)

- ① 개업공인중개사-----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

- ①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 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중개업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생략)

제17조(수수료, 영수증)

- ①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때 수수료 이외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② 중개업자는 제1항의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생략)

<신설>

개 정 안

제16조(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설명)

- ① 개업공인중개사-----  
-----  
-----  
-----  
등기사항증명서-----  
-----.
- ② 개업공인중개사-----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수, 영수증)

- ① 개업공인중개사-----  
-----보수표-----  
-----보수-----보수-----  
-----돈 또는 물건을-----  
보수-----.
- ② 개업공인중개사-----보수표---- 보수-----  
-----  
-----.
- ③ 개업공인중개사-----보수-----  
-----  
-----.
- ④ (현행과 같음)
- ⑤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현 행

제18조(의무, 금지행위)

- ①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매수 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업자가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같다.
- ③ 중개업자는 매각절차의 적정과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④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1. ~ 7. (생략)
- ⑤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4. (생략)
  - 5.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6. ~ 8. (생략)

제19조(협회·중개업자 등의 감독)

- ① (생략)
- ②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자를 감독한다.
- ③ (생략)
- ④ 지방법원장은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중개업자에 대하여 해당법규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생략)

개 정 안

제18조(의무, 금지행위)

- ① 개업공인중개사-----  
-----.
- ②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 ③ 개업공인중개사-----  
-----  
-----.
- ④ 개업공인중개사-----  
-----  
-----  
-----.
- 1. ~ 7. (현행과 같음)
- ⑤ 개업공인중개사-----  
-----.
- 1. ~ 4. (현행과 같음)
- 5. ---개업공인중개사-----
- 6. ~ 8. (현행과 같음)

제19조(---개업공인중개사---)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개업공인중개사-----.
- ③ (현행과 같음)
- ④ -----  
-----개업공인중개사-----  
-----.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제20조(감독상의 명령)

- ① 지방법원장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자에게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 략)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 ① (생 략)
  - 1. (생 략)
  - 2.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3. ~ 6. (생 략)
- ② (생 략)
  - 1. ~ 4. (생 략)
  - 5. 제17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이외의 명목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수수료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6. ~ 8. (생 략)
- ③ (생 략)

개 정 안

제20조(감독상의 명령)

- ① -----  
-----  
-----개업공인중개사-----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  
-----
  - 3.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5. -----보수  
----- 돈 또는 물건을-----  
-----보수-----, -----보수  
-----
  - 6. ~ 8.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 ① 지방법원장은 중개업자(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하였을 경우
  2. ~ 4. (생략)
- ②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자(이 경우 분사무소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 ③ (생략)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 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외부에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 ① -----개업공인중개사-----  
-----  
-----  
-----.
- 1.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  
2. ~ 4. (현행과 같음)
- ② -----개업공인중개사-----  
-----  
-----  
-----.
- 1. ~ 7.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 ① -----개업공인중개사-----  
-----  
-----  
-----.
- ② 개업공인중개사-----  
-----  
-----  
-----.

## 현 행

〈신 설〉

## 개 정 안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도 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41호 2017. 5. 25. 공포)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공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 또는 공증된 외국 공문서 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3조(등기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제46조(첨부정보)

① ~ ⑧ (생략)

〈신설〉

## 개 정 안

## 제46조(첨부정보)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42호 2017. 5. 25. 공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43호 2017. 5. 25. 공포)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구분·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관리자로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5.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구분·합병 및 멸실등기 (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6.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44호 2017. 5. 25.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6의3을 삭제한다.

별표 6의4의 비고란 1. 중 “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를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로 한다.

별표 6의5의 비고란 중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등급)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를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1항, 제2항, 제5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제60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 ①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의3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0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같은 표의 가산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속기직렬 및 전산직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③·④ (생략)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 ⑥ ~ ⑧ (생략)
- ⑨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 서류 각 1통을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생략)

#### 개 정 안

##### 제60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삭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  
--.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6의3]

자격증 소지자 등의 가산구분표(제60조의2 관련)				
공개 경쟁 채용 6급 이하 일반직	구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한글속기 (컴퓨터) 1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 능력 2급, 한글속기 (컴퓨터) 2급	한글 속기 (컴퓨터) 3급
	가산 비율 (%)	1.0	0.5	0.25

[별표 6의4]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관련)
(도표생략)
비고 :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당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그 소명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2.(생략)

개정안

<삭제>

[별표 6의4]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관련)
(도표 현행과 같음)
비고 : 1. ----- ----- -----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 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 수(등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
2.(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6의5]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관련)
(도표생략)
비교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 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 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등급)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하되, 그 소명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 정 안

[별표 6의5]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관련)
(도표 현행과 같음)
비교 : ----- ----- -----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등 급)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745호 2017. 5. 25. 공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별표 2의1 및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 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직급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등 기 국	등기국장이 3급인 경우	소속국장		법원장
			등기국장이 4급인 경우	사무국장		
		본원 소속 등기소		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		지원장		법원장

( 피평가자와 1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별표 2의 2]

평정자와 확인자

기 관 별		구 분		평 정 대 상 자	평 정 자	확 인 자	
법 원 행정 처				5급	소속실·국장	차 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소속실·국장	
사 법 연 수 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5급	사 무 국 장	원장(관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사 무 국 장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법 원 도 서 관				5급	사 무 국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사 무 국 장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5급	사 무 국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사 무 국 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 원			5급	소 속 국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소 속 국 장	
	지 원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5급	지원사무국장	지 원 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지원사무국장
		사 무 국 을 두 지 않 은 지 원	사 무 과 장 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사무과장	지 원 장
			사 무 과 장 이 5급인 경우		5급	지 원 장	법 원 장
	시 · 군 법 원	본 원 소 속			5급	사 무 국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총 무 과 장	사 무 국 장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5급	지원사무국장	지 원 장
					6급 이하	지원총무과장	지원사무국장
		사 무 국 을 두 지 않 은 지 원 소 속	사 무 과 장 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사무과장	지 원 장
			사 무 과 장 이 5급인 경우		5급	지 원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지 원 사 무 과 장	지 원 장					

기 관 별		구 분		평 정 대 상 자	평 정 자	확 인 자
		등 기 소	본 원 소 속			
	등 기 국			5급	소 속 국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소 속 국 장
등 기 소	본 원 소 속			5급 (6급 이하 소장 포함)	사 무 국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소 장 제 외)	소 장	사 무 국 장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5급 (6급 이하 소장 포함)	지 원 사 무 국 장	지 원 장
				6급 이하 (소 장 제 외)	소 장	지 원 사 무 국 장

- \* 등기소 및 과에 속하여 있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소속 등기소장 및 과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 시·군법원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시·군법원 판사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정은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의 평정자·확인자는 연구관은 5급의, 연구사는 6급 이하의 경우와 같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신설〉

[별표2의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직급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 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 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 연구원, 법원공무원교 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 (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본원 소속 등기소	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	지원장	법원장	

(이하 생략)

#### 개정안

제9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별표2의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직급		구분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 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 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 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 연구원, 법원공무원교 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 (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본원	소속 국장
	등기국	등기국장이 3급인 경우	소속 국장		법원장	
		등기국장이 4급인 경우	사무 국장		법원장	
	본원 소속 등기소	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	지원장	법원장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2의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법원행정처			5급	소속실·국장	차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5급	사무국장	원장(관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본원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지원 사무국장
	지원	사무국을 둔지 않은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본원 소속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시·군 법원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총무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지 않은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개정안

[별표2의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법원행정처			5급	소속실·국장	차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실·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5급	사무국장	원장(관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사무국장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본원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지원 사무국장
	지원	사무국을 둔지 않은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본원 소속	5급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총무과장	사무국장	
	시·군 법원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지원 총무과장	지원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지 않은 지원 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원장	법원장
				6급 이하	지원 사무과장	지원장

현행

[별표2의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등기국 (소)	본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사무국장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지원 사무국장

\* (이하 생략)

개정안

[별표2의2]

평정자와 확인자

기관별		구분	평정 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지방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등기국		5급	소속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속과장	소속국장	
	본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사무국장	법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사무국장	
	등기소	사무국을 둔 지원 소속		5급(6급 이하 소장 포함)	지원 사무국장	지원장
				6급 이하 (소장 제외)	소장	지원 사무국장

\* (이하 현행과 같음)

## 예 규

### ◎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25호 2017. 5. 15. 결재)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3. 다. (1). (가)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 3. 다. (1). (사)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 3. 다. (1). (자)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 3. 다. (1). (차)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혈액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 3. 다. (1). (타)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 라. (5). (가) 중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은”으로 한다.
- 3. 라.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자녀돌봄휴가
    - (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공식적인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 자녀돌봄휴가 승인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를 확인하여야 함
    - (나)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자녀 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님

(예)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2일만 부여됨

##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p> <p>다. 공 가</p> <p>(1) (생 략)</p> <p>(가) <u>병역법</u>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p> <p>(나 ~ 바) (생 략)</p> <p>(사) <u>산업안전보건법</u>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 는 <u>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u>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p> <p>(아) (생 략)</p> <p>(자) <u>천재·지변·교통차단</u>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p> <p>(차) <u>혈액관리법 시행령</u>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혈에 참가할 때</p> <p>(타) <u>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u> 제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 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p> <p>(2)·(3) (생 략)</p> <p>라. 특별휴가</p> <p>(1) ~ (4) (생 략)</p> <p>(5) 육아시간</p> <p>(가) <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u> <u>에 대하여</u>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p> <p>(나 ~ 다) (생 략)</p> <p>(6) ~ (8) (생 략)</p>	<p>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p> <p>다. 공 가</p> <p>(1) (현행과 같음)</p> <p>(가) 「<u>병역법</u>」----- ----- -----</p> <p>(나 ~ 바) (현행과 같음)</p> <p>(사) 「<u>산업안전보건법</u>」----- -----「<u>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u>」----- -----</p> <p>(아) (현행과 같음)</p> <p>(자) <u>천재지변</u>----- -----</p> <p>(차) 「<u>혈액관리법 시행령</u>」----- -----</p> <p>(타) 「<u>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u>」----- ----- -----</p> <p>(2)·(3) (현행과 같음)</p> <p>라. 특별휴가</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육아시간</p> <p>(가) -----<u>공무원</u>은----- ----- -----</p> <p>(나 ~ 다) (현행과 같음)</p> <p>(6) ~ (8) (현행과 같음)</p>

## 현 행

## 〈신 설〉

## 개 정 안

## (9) 자녀돌봄휴가

(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공식적인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자녀돌봄휴가 승인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를 확인하여야 함

(나)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자녀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님  
(예)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2일만 부여됨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26호 2017. 5. 16.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Ⅲ. 3. 라. (4). (가) 지급대상 중 “모든 법관”을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으로 한다.
- Ⅳ. 2. 가. (5). (가). ① 첫 번째 - 중 “교육훈련과건”을 “교육훈련과건 (단, 신임법관연수 제외)”로 한다.
- Ⅳ. 2. 가. (5). (나). ② 두 번째 - 중 “특수업무수당중 재판수당은 지급한다.”를 “특수업무수당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수당은 지급한다.”로 한다.
- Ⅳ. 2. 나. (4). (나). ② 첫 번째 - 중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정보수당·재판업무수당은 지급한다.”를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은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Ⅲ.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수당</p> <p>1. ~2. (생략)</p> <p>3. 특수업무수당(규칙 제15조)</p> <p>가. ~다. (생략)</p> <p>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p> <p>(1)~(3) (생략)</p> <p>(4) 재판수당</p> <p>(가) 지급대상 : <u>모든 법관</u></p> <p>(나) (생략)</p> <p>(5)~(10) (생략)</p> <p>Ⅳ. 수당등의 지급방법</p> <p>1. (생략)</p> <p>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p> <p>가산금이 있는 수당의 경우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p> <p>가. 법관인 경우</p> <p>(1)~(4) (생략)</p> <p>(5) 파견</p> <p>(가) 국내파견</p> <p>①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p> <p>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p> <p>- 직무교육을 위한 <u>교육훈련파견</u></p> <p>- (생략)</p>	<p>Ⅲ.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수당</p> <p>1. ~2. (현행과 같음)</p> <p>3. 특수업무수당(규칙 제15조)</p> <p>가. ~다. (현행과 같음)</p> <p>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p> <p>(1)~(3) (현행과 같음)</p> <p>(4) 재판수당</p> <p>(가) 지급대상 : <u>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u></p> <p>(나) (현행과 같음)</p> <p>(5)~(10) (현행과 같음)</p> <p>Ⅳ. 수당등의 지급방법</p> <p>1. (현행과 같음)</p> <p>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p> <p>-----</p> <p>-----</p> <p>-----.</p> <p>가. 법관인 경우</p> <p>(1)~(4) (현행과 같음)</p> <p>(5) 파견</p> <p>(가) 국내파견</p> <p>① -----</p> <p>-----</p> <p>-----</p> <p>-----.</p> <p>----- <u>교육훈련파견</u> (단, <u>신임 법관연수 제외</u>)</p> <p>- (현행과 같음)</p>

현행

② (생략)

(나) 국외파견

① (생략)

② 기타 국외파견 등의 경우

- (생략)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재판수당은 지급한다.

③ (생략)

(6)~(7) (생략)

나. 법원공무원인 경우(특수수당에 한함)

(1)~(3) (생략)

(4) 파견

(가) (생략)

(나) 국외파견

① (생략)

②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정보수당·재판업무수당은 지급한다.

(5)~(6) (생략)

3.~5. (생략)

개정안

② (현행과 같음)

(나) 국외파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타 국외파견 등의 경우

- (현행과 같음)

-----, 특수업무수당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3조에 따른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수당은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6)~(7) (현행과 같음)

나. 법원공무원인 경우(특수수당에 한함)

(1)~(3) (현행과 같음)

(4) 파견

(가) (현행과 같음)

(나) 국외파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은 지급한다.

(5)~(6) (현행과 같음)

3.~5. (현행과 같음)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27호 2017. 5. 16. 결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형태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 제목 “수수료”를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4조제4항에 따라 간이한 형태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 및 제공방법)</p> <p>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제14조(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 및 제공방법)</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형태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제17조(수수료)</p> <p>(생 략)</p> <p><u>〈신 설〉</u></p>	<p>제17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제14조제4항에 따라 간이한 형태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수수료를 면제한다.</u></p>

## ● 신법령 목록 (2017. 5. 1. ~ 5. 15.)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b>【조약】</b>				
조약제23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2017. 5. 8	19004	6
<b>【대통령령】</b>				
대통령령제28003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2017. 5. 2	19002	4
대통령령제2800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800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8006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7
대통령령제2800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8008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8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5. 8	19004	10
대통령령제28010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
대통령령제2801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801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8013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21
대통령령제2801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2801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6
대통령령제28016호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28017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2801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9
대통령령제2801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대통령령제2802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8021호	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28022호	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일부개정령	2017. 5. 8	19004	44
대통령령제2802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2802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2802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28026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28027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2802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2
대통령령제2802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3
대통령령제28030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64
대통령령제2803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2803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2803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28034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3
대통령령제28035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74
대통령령제28036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81
대통령령제28037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	"	85
대통령령제28038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	"	"	91
대통령령제28039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280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2804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5
대통령령제28042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	"	107
대통령령제2804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09
대통령령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5
대통령령제2804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7
대통령령제28046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2017. 5. 11 (그2)	19006	2
대통령령제28047호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	"	"	3
대통령령제28048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5

## 【총리령】

총리령제138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1	19001	4
총리령제139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그2)	2017. 5. 8	19004	2
총리령제139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12	19007	3
총리령제1394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총리령제139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15	19008	4

## 【부령】

해양수산부령제230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1	19001	26
외교부령제47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2	19002	12
국방부령제92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국토교통부령제419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	17
국토교통부령제420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3
미래창조과학부령제93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4	19003	4
국방부령 제925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	"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그2)	2017. 5. 8	19004	3
보건복지부령제49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기획재정부령제621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17. 5. 8	"	122
기획재정부령제622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123
통일부령제9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4
행정자치부령제117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7
농림축산식품부령제258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8
환경부령제69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9
국토교통부령제421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2
해양수산부령제23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9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7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11	19006	4
행정자치부령제118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5. 12	19007	11
농림축산식품부령제259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